

부산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가단351338 판결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 2024. 11. 26.

판결 선고 2024.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54,293원과 그 중 63,851,807원에 대하여 202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9. D이 볼보 25.5톤 중고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D에게 120,000,000원을 이율 연 10.9%, 연체이율 연 13.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2.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84,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D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차량을 반납받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2020.

11. 25. 37,450,000원에 매각되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다른 압류 채권액을 공제한

30,228,130원을 받았고 2021. 1. 4. D에게 위와 같은 공매처분 사실과 실제 변제받은 금액이

30,228,130원이고, 잔여 채무액이 64,539,513원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D은 전주지방법원 2020개회1632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2021년 3월경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을 63,851,807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2024. 7. 24. 기준 D의 대출채무 원금은 63,851,807원이고 2021. 1. 16.부터 2024. 7.

24.까지의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30,902,48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94,754,293원(63,851,807원 + 30,902,486원)과 그 중 63,851,807원에 대하여 202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개인 간에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갚을 정도인데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공매한다고 반강제적으로 가져가서 헐값에 매각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함으로써 대출금을 완제하기로 하여 채무가 종결된 것으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공매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21년 3월경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을

63,851,807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강제적으로 반납 받아 부당하게 헐값에 공매처분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의 반납으로 D의 대출금 채무가 전액 변제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정우